

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106호

## 2024년도 제4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년도 제4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

### 1 선발예정인원

(단위 : 명)

시험명	계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명)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b>총 계</b>				<b>63</b>	
제4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연구사·지도사·7·8·9급)	연구사	농업연구	작 물	5	경기도 3, 포천시 1, 가평군 1
			농업경영	1	연천군 1
		보건연구	공중보건	2	경기도 2
		환경연구	환 경	3	경기도 2, 수원시 1
	지도사	농촌지도	농업경영	1	경기도 1
	7급	수 의	수 의	27	경기도 14, 용인시 2, 고양시 2, 화성시 1, 안산시 1, 평택시 1, 광주시 1, 광명시 1, 의왕시 1, 양평군 2, 여주시 1
	8급	환 경	수 질	9	남양주시 3, 군포시 1, 이천시 1, 양평군 2, 과천시 1, 가평군 1
	9급	환 경	수 질	6	수원시 2, 시흥시 1, 광주시 2, 연천군 1
			대 기	6	안양시 1, 시흥시 1, 의정부시 2, 의왕시 2
			폐 기 물	3	안양시 1, 광주시 2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58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시험에서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적용되지 않음

## 2 시험과목

시험명	계급	직렬	직류	시험과목
제4회 경력경쟁 임용 시험 (연구사· 지도사, 7·8·9급)	연구사	농업연구	작 물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농업경영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업정책학
		보건연구	공중보건	보건학, 역학, 환경보건학
		환경연구	환 경	환경공학, 환경화학, 환경보건학
	지도사	농촌지도	농업경영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업정책학
	7급	수 의	수 의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8급	환 경	수 질	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건
	9급	환 경	수 질	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건
			대 기	환경공학개론, 화학, 지구과학
			폐 기 물	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건

##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별 20문제, 4지택1형)

○ 시험시간은 과목별 20분(1문항 1분 기준)입니다.

시험명	계급	직렬	직류	과목수	시험시간
제4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연구사·지도사, 7·8·9급)	연구사·지도사	전직렬	전직류	3과목	60분 (10:00 ~ 11:00)
	7·8·9급	전직렬	전직류	3과목	60분 (10:00 ~ 11:00)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성검사 실시 예정이며, 일정 등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자격·경력 등) 심사]

다. 제4차 시험 : 면접시험[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라. 합격자 결정방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s://www.moleg.go.kr>) 참고

##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생략)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마. 삭제
    - 바. 삭제
    -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을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2006. 12. 31. 이전 출생자)

다.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시험명	계급	직렬	직류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제4회 경 력 경 쟁 임 용 시 험 (연구사· 지도사, 7·8·9급)	연구사	농업연구	작 물	<b>【경기도, 포천시】</b>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b>【가평군】</b>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농업경영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보건연구	공중보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화학, 생물학(미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위생공학, 유전공학(생명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환경연구	환 경	환경공학(환경학, 환경독성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기상학(대기과학, 기후에너지공학), 지구과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지도사	농촌지도	농업경영	농업계통(농업, 농학, 농생물학, 임업, 임학, 원예학, 축산학, 수의학, 낙농학, 농경제학, 농기정학, 농공학, 농화학)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7급	수 의	수 의	수의사
	8급	환 경	수 질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내지 2급
	9급	환 경	수 질	<b>【수원시】</b>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내지 3급 <b>【시흥시, 광주시, 연천군】</b>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 기 물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1)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이 **자격증·면허증인** 경우 유의사항

- 응시에 필요한 자격·면허 취득여부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
-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취득할 수 있을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 시험 응시를 위해 허위로 자격·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 자격·면허 소지(유효) 여부는 자격·면허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면허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2) **연구사·지도사** 응시자격요건 관련 유의사항

- **‘00학을 전공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또는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 **‘00계통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이라 함은 전문대학 이상에서 해당 학 또는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다만,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사람은 해당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에는 대학원에서의 해당 학 또는 동일계통 학의 전공자(석·박사 학위)도 포함합니다. 또한, 대학교(학부)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또는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 취득 가능할 경우 포함)한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 **‘해당 학 또는 관련계통의 학’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속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추천서에 의하여 판단하며, 추천서에는 『우리대학의 00학과는 공고문상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인 00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 함은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이 가능한 사람을 말합니다. ([붙임2] ‘추천서 서식 및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고, 동일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추천서의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해당 학교에 질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 라. 거주지 제한

- 2024년도 제4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 또는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2023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4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 공통적용사항 >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행정구역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함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잔여 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환산]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거주지 제한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단, **연구사, 수의7급, 환경8급(수질) 모집단위는 거주지 제한 없음**

## 5 문제출제

2024년도 제4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모든 과목 시험문제는 경기도인사위원회 자체 출제문제로 시험문제는 비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 6 시험일정

시험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기간 중 상시 접수가능)	취소기간 [추가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제4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연구사·지도사, 7·8·9급)	9. 9.(월) 09:00 ~ 9. 11.(수) 18:00	9. 9.(월) 09:00 ~ 9. 14.(토) 18:00 [9. 23.(월) 09:00 ~ 9. 25.(수) 18:00]	필기시험	9. 27.(금)	10. 5.(토)	10. 23.(수)
			면접시험	10. 23.(수)	11. 11.(월) ~ 11. 19.(화)	12. 6.(금)

※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하지 못할 경우, 별도로 지정된 추가 취소기간을 활용하여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소, 합격자명단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s://www.gg.go.kr>)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를 통해 본인성적에 한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확인기간 별도 안내)

## 7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1)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
  -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객센터(☎1522-0660)로 문의
  -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 (응시수수료 결제완료 등)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 (2)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상시 접수가능 (시작일 09:00 ~ 마감일 18:00)
  - ※ 마감시간(마감일 18:00)에 임박하여 접수하는 경우, 시스템오류 등의 문제로 접수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응시수수료 : [연구사·지도사·7급] 7,000원 / [8·9급] 5,000원

- (1)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전화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
- (2)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3) 단,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우선 납부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 응시수수료는 추후 환급됩니다.
  - ※ 면제 대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청 받을 수 있음



**다. 응시수수료 환급 : 다음의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일부 또는 전액 환급**

- (1) 일부환급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환급)
- (2) 전액환급
  -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응시원서 접수기간이나 취소기간(추가 취소기간 포함)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1)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한 일자에 시행하거나 전국 동시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2)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 응시자 얼굴이 정면을 향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하여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을 등록
-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 원서접수기간 중 결제완료 이후 시험 직렬(직류)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제 취소 후 원서작성 및 응시수수료 결제를 다시 해야 함
- (4)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 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 (5) 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8 필기시험 가산점(가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마' 참고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의상자 가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가산 대상 자격(면허)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단,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모집단위는 자격(면허)증 보유에 따른 가산점을 적용(부여)하지 않음

**나.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다. 의사상자 등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의사상자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1)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에 의한 의사상자 등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3%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에서 확인

(3)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가 '나' 항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가산합니다.

**라. 가산 대상 자격(면허)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경우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면허)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특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연구사·지도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가산비율	5%	3%

(2) 가산 대상 자격(면허)증 종류는 [붙임1] '가산 대상 자격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마.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1) 필기시험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s://local.gosi.go.kr>)에 자격증 정보 등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2) 가산점 등록기간 및 시간

시 험 명	등록기간 (기간 중 상시 등록 가능)
제4회 경력경쟁임용시험(연구사·지도사, 7·8·9급)	2024. 10. 5.(토) 09:00 ~ 10. 7.(월) 18:00

※ 마감일 18:00까지 필히 등록하여야 함

(3) 가산점 등록대상 및 등록사항

등록대상	등록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보훈번호, 가점비율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의상자 가족)	의사상자 등 여부, 증서번호, 가점비율 ※ 가점 대상자 확인을 위해 필요시 의사상자 증명서 제출을 요청 받을 수 있음
가산 대상 자격(면허)증 소지자	자격(면허)증 종류, 자격(면허)번호

※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등(의사자 유족, 의상자, 의상자 가족)은 동일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본인의 가산점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등록기간 내 등록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 가산점의 허위 기재, 잘못된 입력, 입력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가산점 등록 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9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자격 및 거주지제한 사항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은 면접시험 최종예정일을 의미합니다.
- 나.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당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경력,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2(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에 따라, 법령을 위반하여 당해 시험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 비위행위로 인하여 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마.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총점의 60% 미만으로 득점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시험 실시 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바. 제4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모든 과목 시험문제는 경기도인사위원회 자체 출제 문제로 시험문제는 비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필기시험 문제의 경우 해당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유효한 법령, 고시, 판례 등을 기준으로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과목 또는 문항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 필기시험일이 2024. 10. 5.인 경우, 2024. 8. 31. 현재 유효한 법령 등 기준

아. 필기시험 장소는 응시자가 지원한 임용예정기관 소재지의 학교가 아닐 수 있으며, 응시인원 규모 및 시험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응시자별 시험장 배정이 이루어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필기시험 합격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를 통해 면접등록을 하여야 하며, 면접등록을 하지 않거나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한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차. 필기시험 성적조회는 실제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한하여 지정된 열람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필기시험 성적조회 열람기간 공고

카.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4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할 수 없습니다.

※ 임용예정기관 '경기도'로 응시하여 최종합격한 경우,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경기도청(수원시 소재), 경기도청 북부청사(의정부시 소재), 경기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서 근무하며, 그 외 시·군 또는 지방의회의 경우 해당 임용예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해당 및 공무원신체검사 결과 부적합 등의 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파. 제4회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2(임용 및 임용 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 준용되지 않습니다.

하. 자원봉사실적은 해당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행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며, 대상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제출기간에 봉사실적 인증서·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헌혈도 자원봉사실적으로 제출 가능(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기간 동안 헌혈자 본인에 한해서만 유효하며 헌혈 1회당 4시간 / 연간 최대 20시간 인정)

- ※ 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관리([www.vms.or.kr](http://www.vms.or.kr)), 1365 자원봉사 포털([www.1365.go.kr](http://www.1365.go.kr)) 등에서 출력한 인증서 유효, 봉사일자·장소·내용·시간이 명기되고 해당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도 유효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인정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의 무보수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인정불가 사례 : 물품 및 현금 기부·후원, 종교 활동, 졸업 및 성적요건 충족을 위해 수행한 봉사 등)

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너.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경기도 홈페이지 (<https://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031-8008-40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